지식과 정보가
나비처럼 자유로운 세상

입법현안 법률정보 제19호

#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2014. 2


1 개요
2 미국
3 영국
4 독일
5 프랑스



국회도서관
NATIONAL ASSEMBLY LIBRARY
법 률 정 보 실

입법현안 법률정보 제19호

#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2014. 2

국회도서관
NATIONAL ASSEMBLY LIBRARY
법 률 정 보 실

# 목 차

1. 개요 ····· 1

2. 미국 ····· 3

가.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관 ····· 3

나. 「미국연방법전」 제12편 제3417조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 ····· 4

3. 영국 ····· 6

가.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관 ····· 6

나. 「1998년 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 ····· 6

4. 독일 ····· 9

가.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관 ····· 9

나. 「연방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 ····· 9

5. 프랑스 ····· 12

가.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관 ····· 12

나. 「형법」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 ····· 12

# 1. 개요

2014년 1월 8일 창원지방검찰청은 3개 신용카드회사의 개인신용정보 약 1억 건이 대량 유출되었다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에 대하여 그동안 개인신용정보를 유출한 금융회사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구제가 미약했다는 지적이 있다.[1] 이에 본 보고서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민간기업의 책임과 피해자 구제에 관하여 주요국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우리 법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된 주요국의 입법례는 매우 다양하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특히 개인정보를 유출한 민간기업의 책임,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획득하여 영업에 이용한 민간기업의 책임,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자의 구제에 중점을 두었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민간기업에 대해서 미국은 고의·중과실의 경우에 피해자의 실질적 손해와 법원이 정하는 징벌적 손해를 모두 배상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변호사 비용까지도 배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더불어 개인정보를 유출한 민간기업 외에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획득한 민간기업에게도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다음으로 영국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실질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모두 배상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정보관리자가 그 손해와 자신의 책임이 관련 없음을 밝히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유리한 규정을 두고 있다. 독일도 영국과 유사한 입증책임의 전환을 규정하고 있

1) 김효연·최지현, “신용카드사의 대규모 개인신용정보 유출의 쟁점과 과제”, 이슈와 논점 제784호, 2014. 1. 29, 1면

으며, 미국과 유사하게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획득한 민간기업에게도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언급한 국가와 좀 다른 형태로 개인정보보호를 규율하는 프랑스에서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5년 이하의 구금형과 30만 유로(약 4억4,000만 원)[2]의 벌금을 동시에 부과하고 있다. 또한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획득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도 같은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법인에 대해서는 구금형을 과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벌금액을 최대 5배까지 늘리고 일정한 업무 수행 금지, 영업소 폐쇄 등 다른 대안적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형사적 제재 외에 민사의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가능하다.

이상과 같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민간기업의 책임은 물론,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획득하여 영업에 이용한 민간기업의 책임도 엄중히 묻고 있으며, 그 책임의 대상이 주로 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다양한 제재 수단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자의 구제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위반사실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하도록 하는 법정의 무과실 책임형태를 취하여, 피해자에게 유리한 여건을 마련한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 유럽연합 EUR: 1,463.44원(2014. 2. 11. 기준)

# 2. 미국

## 가.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관

미국은 공공, 금융, 통신, 교육, 의료 등 각 영역별로 별도의 법률을 마련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기존의 금융부문 법률로는 「1970년 공정신용보고법」(Fair Credit Reporting Act of 1970), 「1978년 금융프라이버시권법」(Right to Financial Privacy Act of 1978), 「1999년 금융서비스현대화법」(Financial Services Modernization Act of 1999)이 있는데[3], 모두 「미국연방법전」(U.S. CODE)에 포함되어 있다. 이후 2001년 발생한 엔론사태(Enron Scandal)를 계기로 회사의 회계 부정 방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정된 「2002년 사베인즈옥슬리법」(Sarbanes-Oxley Act of 2002)과,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 부분의 개혁을 하기 위해 2010년에 제정된 「도드-프랭크 월스트리트 개혁과 소비자 보호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은 모두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금융회사와 감독기관의 책임을 강화하였고, 관련 사항에 대한 기존의 금융부문 법률을 개정하였다.

3) 김기열, "공공부문에 관한 외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와 국내 입법의 검토방향", 법제 제633호, 2010. 9, 21면

## 나.「미국연방법전」제12편 제3417조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

여러 개인정보보호법 중에서 신용카드회사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에 관련된 법률은「1978년 금융프라이버시권법」인데 이 법은 현재「미국연방법전」에 포함되어 있다.「미국연방법전」제12편 제3417조(12 USC 3417)[4]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최소 100달러부터 소비자가 입은 실질적 손해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조치에 들어가는 변호사 비용, 그리고 고의·과실의 경우에는 법원이 정하는 징벌적 손해까지 모두를 합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특히 이 법률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금융회사는 물론 불법적인 개인정보를 획득한 금융회사에게도, 소비자의 실질적 손해에 대해서는 법정의 무과실 책임형태를 취하는 점[5]에서 관심을 끈다.

| 원 문 | 번 역 문 |
|---|---|
| 12 USC 3417: Civil penalties | 미국연방법 제12부 제3417조 민사 제재 |
| §3417. Civil penalties | 제3417조 민사 제재 |
| (a) Liability of agencies or departments of United States or financial institutions | (a) 정부 또는 공공기관 또는 금융회사의 책임 |

4) 미국 하원 미국연방법개정위원실 홈페이지 참조 (http://uscode.house.gov/view.xh 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2-section3417&num=0&edition=prelim, 2014. 2. 5. 방문)

5) 우리나라의「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은 법정의 무과실 책임이 아니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이다.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1990호, 2013. 8. 6, 일부개정) 제39조(손해배상책임)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원 문 | 번 역 문 |
| --- | --- |
| Any agency or department of the United States or financial institution obtaining or disclosing financial records or information contained therein in violation of this chapter is liable to the customer to whom such records relate in an amount equal to the sum of- | 이 장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용기록 또는 정보를 획득하거나 공개한 정부 또는 공공기관 또는 금융회사는 그 신용기록 또는 정보에 관련된 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모든 합계에 해당하는 만큼의 책임이 있다 - |
| (1) $100 without regard to the volume of records involved; | (1) 관련 정보의 양에 관련 없이 100달러; |
| (2) any actual damages sustained by the customer as a result of the disclosure; | (2) 공개의 결과로 소비자가 입은 실질적 손해; |
| (3) such punitive damages as the court may allow, where the violation is found to have been willful or intentional; and | (3) 중과실 또는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 법원이 정하는 징벌적 손해; 그리고 |
| (4) in the case of any successful action to enforce liability under this section, the costs of the action together with reasonable attorney's fees as determined by the court. | (4) 이 조항에 따라 책임을 묻기 위한 모든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및 법원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정한 변호사 비용. |
| (b) [...] | (b) [...] |

# 3. 영국

## 가.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관

영국은 오랜 전부터 「1974년 소비자신용법」(Consumer Credit Act 1974)으로 개인정보보호를 규율해 왔지만 본격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다룬 것은 「1984년 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Act 1984)이다. 그런데 1995년 유럽연합(European Union)이 '개인정보의 처리 및 그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개인의 보호에 관한 지침'[6]을 채택하면서, 영국이 이를 받아들여 「1984년 정보보호법」을 전부 개정하여 「1998년 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Act 1998)이 마련되었다. 이후 「2000년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2000)에 의하여 개정되었다.[7]

## 나. 「1998년 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

「1998년 정보보호법」 제13조에 따르면 회사의 정보관리자(Data Controller)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개인에 대하여 실질

6)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October 1995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ELEX:31995L0046:en:HTML, 2014. 2. 5. 방문)

7) 최경률, "영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연혁 및 1998년 정보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중심으로", 중앙법학 제11집 제1호 통권 제31호, 2009. 4, 87면

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하는데, 미국과 마찬가지로 법정의 무과실 책임형태를 취하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여기서 정보관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목적과 방법을 정할 수 있는 관리자 또는 관리자 집단이므로[8], 경우에 따라서는 경영의 최고책임자인 개인 또는 정부, 민간기업 등이 배상의 책임자가 될 수 있다.[9] 특히 동조 제(c)항에서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정보관리자는 그 손해와 자신의 책임이 관련 없음을 입증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유리하도록 입증책임이 전환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입증책임의 전환이 정신적 손해까지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 원 문 | 번 역 문 |
|---|---|
| **Data Protection Act 1998** | **1998년 정보보호법** |
| **13 Compensation for failure to comply with certain requirements** | **제13조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배상** |
| (1) An individual who suffers damage by reason of any contravention by a data controller of any of the requirements of this Act is entitled to compensation | (1) 정보관리자가 이 법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은 개인은 그 손해에 대해 그 정보관리자로부터 배상을 받을 권한이 있다. |

8) 「1998년 정보보호법」 제1조 제1항에서는 “data controller”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data controller” means, subject to subsection (4), a person who (either alone or jointly or in common with other persons) determines the purposes for which and the manner in which any personal data are, or are to be, processed.
이에 따르면 “data controller”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목적과 방법을 정할 수 있는 관리자 또는 관리자집단이다.

9) 영국(아일랜드)정보보호위원회 정보관리자 홈페이지 참조 (https://www.dataprotection.ie/docs/Are-you-a-Data-Controller-/43.htm, 2014. 2. 11. 방문)

| 원 문 | 번 역 문 |
| --- | --- |
| from the data controller for that damage. | |
| (2) An individual who suffers distress by reason of any contravention by a data controller of any of the requirements of this Act is entitled to compensation from the data controller for that distress if— | (2) 정보관리자가 이 법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정신적 손해를 입은 개인은 그 손해에 대해 그 정보관리자로 부터 배상을 받을 권한이 있다 - |
| (a) the individual also suffers damage by reason of the contravention, or | (a) 그 개인 또한 그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입거나, |
| (b) the contravention relates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for the special purposes. | (b) 그 위반이 특정한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경우. |
| (3) In proceedings brought against a person by virtue of this section it is a defence to prove that he had taken such care as in all the circumstances was reasonably required to comply with the requirement concerned. | (3) 이 조항에 따라 소송을 당하는 자는 그가 모든 상황에서 적정하게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였음을 입증하는 (소송 상의) 피고가 된다. |

# 4. 독일

## 가.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관

독일은 개인정보의 유출에 관련된 법률을 연방 및 각 주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연방의 경우에는 「연방정보보호법」(BDSG), 「전기통신법」(TKG), 「텔레미디어법」(TMG)이 대표적인 법률이다.[10] 「전기통신법」과 「텔레미디어법」은 전기통신과 정보통신에 있어서 각각 적용되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개인정보유출과 관련된 법률은 「연방정보보호법」이다.

## 나. 「연방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

「연방정보보호법」(Bundesdatenschutzgesetz, BDSG)은 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하여 민간기업(동법 제7조)과 정부(공공기관)(동법 제8조)로 나뉘어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7조[11]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유출한 민간기업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자와 함께 연대하여,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관리자(Verantwortliche Stelle)[12]는 그 손해

10) 박희영, "독일의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법적 대응에 관한 법제", 최신외국법제정보 2012년 제8호, 2012, 9, 39면

11) http://www.gesetze-im-internet.de/bdsg_1990/__7.html (2014. 2. 5. 방문)

12) 「연방정보보호법」 제3조 제7항에 따르면 "Verantwortliche Stelle"는 개인 또는 법인이

와 자신의 책임이 관련 없음을 입증하여 그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유리하도록 간접적으로 입증책임을 전환하였고,[13] 불법적인 정보를 수집한 관리자와 그와 연관된 기업에 대해서도 법정책임을 묻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불법적인 개인정보를 사들여 이용한 다른 민간기업도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 원 문 | 번 역 문 |
|---|---|
| **Bundesdatenschutzgesetz** | **연방정보보호법** |
| **§ 7 Schadensersatz** | **제7조 배상** |
| Fügt eine verantwortliche Stelle dem Betroffenen durch eine nach diesem Gesetz oder nach anderen Vorschriften über den Datenschutz unzulässige oder unrichtige Erhebung, Verarbeitung oder Nutzung seiner personenbezogenen Daten | 관리자가 이 법과 다른 정보보호규정에 따르지 않거나 위반되는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 또는 이용하는 과정에서 정보의 주체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그 관리자 또는 그 연관 기업은 그 손해로 입은 정보의 주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 배상 의무는 그 관리자가 사건 |

---

될 수 있다.
Verantwortliche Stelle ist jede Person oder Stelle, die personenbezogene Date n für sich selbst erhebt, verarbeitet oder nutzt oder dies durch andere im Au ftrag vornehm en lässt.

13)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도 이와 같은 형태로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1990호, 2013. 8. 6, 일부개정) 제39조(손해배상책임)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 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생략)

| 원 문 | 번 역 문 |
| --- | --- |
| einen Schaden zu, ist sie oder ihr Träger dem Betroffenen zum Schadensersatz verpflichtet. Die Ersatzpflicht entfällt, soweit die verantwortliche Stelle die nach den Umständen des Falles gebotene Sorgfalt beachtet hat. | 과 관련된 모든 상황에서 충실하게 준수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적용하지 않는다. |

# 5. 프랑스

## 가.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관

프랑스는 1960~70년대에 정보처리기술의 발달로 행정정보의 전산화를 하게 됨에 따라, 일찍부터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 결과로 1978년에 「정보처리·축적 및 자유에 관한 1978년 1월 6일의 법률」(Loi n°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이하 정보처리법)이 제정되었다.[14] 그런데 정보처리법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의 책임은 「형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형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 나. 「형법」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

「형법」[15] 제226-17조는 정보처리법에 따라 정보처리자가 정보의 안전을 보장하고, 제3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막기 위해 모든 유용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 5년의 구금형과 30만 유로(약 4억4,000

14) 이한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프랑스 CNIL과의 비교를 통하여", 법학논고 제41집, 2013. 2, 479-481면

15) http://www.legifrance.gouv.fr/affichCode.do;jsessionid=68AEA47C3F69FF0AA2B0BD522F8BA051.tpdjo06v_2?cidTexte=LEGITEXT000006070719&dateTexte=20140205 (2014. 2. 5. 방문)

만원)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또한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에 대하여도 동법 제226-18조에 의하여 같은 처벌을 한다. 이에 따르면 행위 주체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은 물론 법인도 처벌을 받으며,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사들여 이용한 법인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처벌 대상이 법인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선이 자연인의 5배로 늘어나고, 법인의 일정한 업무수행 금지, 5년 이하의 사법감시, 영업소 폐쇄 등의 다양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동법 제131-38조 및 제131-39조). 더불어 개인정보보호 위반에 대한 민사의 손해배상청구는 별도로 가능하다.

| 원 문 | 번 역 문 |
|---|---|
| **Code pénal** | **형법[16]** |
| **Article 131-38**<br>Le taux maximum de l'amende applicable aux personnes morales est égal au quintuple de celui prévu pour les personnes physiques par la loi qui réprime l'infraction.<br>[...] | **제131-38조**<br>법인에 대하여 선고하는 벌금형의 상한은 형사법률이 자연인에 대하여 정하는 액의 5배로 한다.<br>[...] |
| **Article 131-39**<br>Lorsque la loi le prévoit à l'encontre d'une personne morale, un crime ou un délit | **제131-39조**<br>법률이 규정하는 경우 법인에 대하여 선고할 수 있는 중죄 또는 경죄의 특별 형벌은 다음 |

| 원 문 | 번 역 문 |
| --- | --- |
| peut être sanctionné d'une ou de plusieurs des peines suivantes : | (각호 중) 하나 또는 수개로 한다: |
| 1° [...] | 1. [...] |
| 2° L'interdiction, à titre définitif ou pour une durée de cinq ans au plus, d'exercer directement ou indirectement une ou plusieurs activités professionnelles ou sociales; | 2. 직업 활동 또는 사회활동 중 하나 또는 수개에 대한 영구적 또는 5년 이하의 직접 또는 간접적 수행금지; |
| 3° Le placement, pour une durée de cinq ans au plus, sous surveillance judiciaire; | 3. 5년 이하의 사법감시; |
| 4° La fermeture définitive ou pour une durée de cinq ans au plus des établissements ou de l'un ou de plusieurs des établissements de l'entreprise ayant servi à commettre les faits incriminés ; | 4. 범죄행위에 제공된 기업의 영업소 중 하나, 수개 또는 전부에 대한 영구적 또는 5년 이하의 폐쇄; |
| 5° L'exclusion des marchés publics à titre définitif ou pour une durée de cinq ans au plus ; | 5. 영구적 또는 5년 이하의 공공계약 배제; |
| 6° [...] | 6. [...] |
| **Article 226-17** | **제226-17조** |
| Le fait de procéder ou de faire procéder | 전조의 1978년 1월 6일자 법률 제78-17호 제34 |

| 원 문 | 번 역 문 |
| --- | --- |
| à un traitement de données à caractère personnel sans mettre en oeuvre les mesures prescrites à l'article 34 de la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précitée est puni de cinq ans d'emprisonnement et de 300 000 Euros d'amende. | 조에 의한 조치들을 시행하지 않고 개인정보의 전산처리를 하거나 하도록 하는 행위는 5년의 구금형 및 30만 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
| **Article 226-18**<br>Le fait de collecter des données à caractère personnel par un moyen frauduleux, déloyal ou illicite est puni de cinq ans d'emprisonnement et de 300 000 Euros d'amende. | **제226-18조**<br>사기, 부정 또는 불법 수단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5년의 구금형 및 30만 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

➢ **법률자료조사관 : 조동관 (02-788-4768)**

16) 본 번역문은 법무부 형사법제과에서 발행한 「프랑스 형법」(2008)을 참고하였음.

## 「입법현안 법률정보」 발간목록

1. 대규모점포로부터 골목상권 보호 (2012. 7)
2. 주요국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방지 입법례 (2012. 8)
3. 독도와 국제사법재판소 관련 국제규범 (2012. 8)
4. 농업재해보험 관련 외국입법례 (2012. 9)
5. 민생치안 관련 외국입법례 (2012. 10)
6.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외국입법례 (2012. 10)
7. 투자자와 국가 간의 분쟁해결(ISD)에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의 적용 (2012. 11)
8. 원자력발전 안전 감시체계와 개선 과제 (2013. 1)
9. 4대 중증질환의 비급여대상에 관한 외국의 사례 (2013. 4)
10.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에 관련된 법제와 외국 분단 국가의 사례 (2013. 5)
11. 기초연금의 수급대상 : 호주와 캐나다의 사례 (2013. 6)
12.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입법례 : 징벌적 손해배상 vs 배액배상 (2013. 6)
13. 공공갈등의 해결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2013. 8)
14. 기업 경영진의 고액연봉제한을 위한 스위스 헌법 개정 (2013. 9)
15. 일본의 줄기세포 재생의료 실용화 지원 법률 (2013. 10)
16. 국회선진화법 중 안건 신속처리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2013. 11)
17. 전자적 개인정보 파기 위탁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2013. 12)
18. 공직자 뇌물수수 처벌의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에 관한 외국 입법례 (2014. 2)
19.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2014. 2)

※ 국회법률도서관 홈페이지(http://law.nanet.go.kr)를 통해서도 「입법현안 법률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입법현안 법률정보 제19호

발 행 인 황창화 국회도서관장
편 집 인 이규담 법률정보실장
집 필 자 조동관 법률자료조사관
발 행 처 국회도서관 법률자료과
(150-70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발 행 일 2014년 2월 24일
인 쇄 동서문화사 (02-2266-8179)

© 국회도서관 2014
발간등록번호 : 31-9720101-001145-14

〈비매품〉